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이태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5346 발의년월일 : 2019. 2. . 발 의 의 원 : 이태손 의원

기 전 · 의대근 기전

김규학 의원 김혜정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항병문 의원 황순자 의원 홍인표

(외 찬성의원 인)

1. 제정이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 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·시민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나.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)
- 라.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·대상차량· 방법·제외차량·시간·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 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"란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.
- 2. "자동차 배출가스 등급"이란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제4조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과 시민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하여야 하며,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민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미세먼지 대책사업 등)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
 - 2.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 - 3. 사업장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
 - 4. 공사장, 나대지,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검토
 - 2.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
 - 3. 제11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
 - 4.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1. 대구광역시의회 의원
- 2.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·기관의 대표자
- 4.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·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,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- 5.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·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·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0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주민제안 등)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- 제12조(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)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 을 금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·교체 또는 저공 해엔진으로 개조·교체한 자동차
 - 나.「지방세법」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 용 자동차
 - 다.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
 -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 전 지역으로 한다.
 - ④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시간 및 절차는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3조(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단속 담당 공무원(이하 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행 제한 위반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

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,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 및 제13조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: 미세먼지법)

[시행 2019. 2. 15] [법률 제15718호, 2018. 8. 14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미세먼지"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.
 - 가.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(PM-10: 미세먼지)
 - 나. 입자의 지름이 2.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(PM-2.5: 초미세먼지)
- 2. "미세먼지 생성물질"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물질을 말한다.
 - 가. 질소산화물
 - 나. 황산화물
 - 다. 휘발성유기화합물
 - 라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
- 3. "미세먼지 배출원"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·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1조 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
- 2.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
- 3.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
- 4.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·단계별 대책
- 5.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
- 6.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
- 7.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 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 게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
 -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,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
 - 3.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·조정
 - 4.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,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·대상지역·대상차량·발령시간·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조례로 정한다.
- 제19조(비상저감조치의 해제) ① 시·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 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 -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"집중관리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

-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1.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
- 2. 살수차·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
- 3.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
- 4.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
- 5.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
- 6.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·해제 요건, 절차,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. [시행일: 2019. 8. 15] 제22조
- 제26조(자료제출·검사 등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·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

- 제9조(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)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"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.
 - 1.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
 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
 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(補綴用)·생업활동용으로

사용하는 자동차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-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 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- 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- 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5.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- 6.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
- 7.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- 8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
- 9.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
- 제10조(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)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 - 1. 살수차,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
 - 2.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
 - 3. 미세먼지의 측정·분석 및 불법·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
 -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- 제11조(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(이하 "비상저감조치"라 한다)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

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
- 2.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
- 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
- 4.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 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
-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12조(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)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·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,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, 사업장,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, 신문·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.
 -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방송법」 제2 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- ⑤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.
 -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 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한다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

- 제7조(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당일(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, 다음 날(비상저감조치 시 행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
 - 2. 당일에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,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
 - 3.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9조(비상저감조치의 해제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.
 - 1.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
 - 2. 폭우,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요청으로 시·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·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·도지사 와 협의해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, 사업장,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- 제10조(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 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1.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
 - 2.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
 - 3.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,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
 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(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)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- 제11조(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